

<2020학년도 제2학기 취업계 안내>

1. 시행목적: 취업한 학생이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방안 마련,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을 확보
2. 관련근거
 - 가. 학칙 제41조(학업성적), 학사에 관한 규정 제31조(장기결석자의 성적처리), 출결관리에 관한 시행세칙 제10조(장기결석자의 관리) 제1항 및 제3항
 - 나.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-8328(2016.09.26.) 「김영란법」 시행에 따른 「미출석 취업자 학점 부여」 관련 학사 운영 안내
3. 적용대상
 - 가. **최종학기자 중 조기취업자(재학중 최종학기 1회에 한함)**
 - 나. **취업계 적용 학기에 수강 신청한 학점을 모두 이수할 경우 졸업이 가능한 자**
4. 제출시기
 - 가. 매 학기 시작 후~기말고사 시작 1주일 전까지 학생 소속 학과사무실로 제출
 - 나. 취업 확정 후 출근 전 수강 교과목 담당 교원에게 취업사실을 미리 알리고 취업에 따른 성적평가방법(과제물 제출, 시험 응시 등)을 안내 받을 것
 - 다. 제출서류가 준비되는 즉시 학생 소속 학과사무실로 제출, 기말고사 시작 1주일 전까지 제출해야 함
5. 제출서류

연번	제출서류	내용
1	취업계	■ 붙임 양식 참조, 수강 교과목 담당 교원 서명 받은 후 학생 소속 학과사무실 제출
2	건강보험가입 증빙서류	■ 건강보험가입(예정) 증명서,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등 건강보험가입(예정)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■ 해외 취업자의 경우 취업비자 사본 또는 해외 취업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
3	재직증명서	■ 취업한 근무처에서 발급

6. 취업계 미인정
 - 가. **e러닝 교과목, 사회봉사 교과목, 창업 학생, 인턴과정 학생: 취업계 인정 불가**
 - 나. **단, 채용전환형 인턴의 경우 인정 가능(채용전환 증빙서류 추가 제출)**
7. 성적평가 및 확인 방법
 - 가. 수강 신청한 교과목 담당 교수 재량에 따라 성적평가방법(과제물 제출, 시험 응시 등)을 학생에게 안내
 - 나. **취업계 제출 시 자동출석인정 또는 자동성적부여가 되는 것이 아니며, 1/4이상 결석에 따른 자동 F학점 부여만 면제함. 교원이 안내한 성적평가방법대로 미 이행 시 F학점 부여**
 - 다. 매 학기 기말고사 종료 후 **성적확인 및 이의신청 기간 중 본인의 성적을 반드시 확인**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 교원에게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기간 내 이의신청할 것. 성적 미확인 또는 **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성적 정정 불가**
8. 신청 및 승인방법
 - 가. **신청(학생):** 취업계(붙임: 재직(예정)증명서 및 건강보험 가입(예정)증명서) 양식에 관련사항을 작성하고 교과목 담당교수 및 지도교수의 확인(서명)을 득한 후 학과사무실에 제출
 - 나. **승인(학과장):** 전자문서(붙임: 학생별 취업계, 재직증명서, 건강보험 가입증명서)를 교무팀에 제출(**학사행정(천안)1단결재**)로 제출
 - 다. **승인(교무처):** 해당 학과 신청 및 승인 건에 대한 최종 승인
9. 문의: 소속 학과사무실, 교무팀(041-550-5015)